

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사업 요약

지급개요	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(1회) 긴급 생계 지원						
지원대상	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						
	농어업인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및 종사자, 문화, 체육, 보건 종사자, 학원강사, 노점상, 요양보호사, 프리랜서, 상시고용자, 임시·일일고용자, 실업자 등						
	※ 지급제외 대상: 기초(생계급여), 긴급(생계급여)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* *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세희망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,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가구 등						
지급규모	(1인가구)40만원, (2인가구)60만원, (3인가구)80만원, (4인가구 이상) 100만원/1회지급						
신청기간	'20. 10.12.(월) ~ 11.30(월) 18:00까지						
지원기준	소득기준 75%이하				(단위:원)		재산기준
	가구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중소도시	농어촌지역
	월소득	1,3180,000	2,244,000	2,903,000	3,562,000	3.5억이하	3억이하
	연소득	15,816,000	26,928,000	34,836,000	42,744,000		
감 소 증명서류	최근 소득('20.7~9월) '20. 7월 ~ 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(본인 증빙자료)		vs (비교)	비교 소득(과거 비교 기간) ① '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② '19년 7~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 '20년 1~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		① ~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	
서류간소화	- 감소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통장거래 내역 및 소득감소신고서 대체 가능 - 일용근로자,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신고서 인정 →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						
신청장소	현장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						
신청인	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						
지급시기	'20. 12월 예정 - 신청 시 등록 계좌 입금 - 지급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완료 후 시군 일괄 지급 예정						